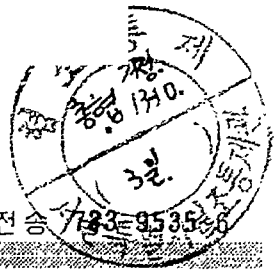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 02 ) 731-6349 / 전송 733-9535

문서번호 시설 58412 - 443

시행일자 93. 5. 19

(경유) (제1안)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증영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93.5.19.</div> 법무담당관 협조통제관 협조
도시계획국장	전 결	
시설계획과장	[Handwritten Signature]	
가로계획2계장	[Handwritten Signature]	
기안	허찬욱(나석근)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 관보 게재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77.3.29) 및 강서구 도정 58410 - 808 (93.4.27) 외 관련입니다.

2. 강서구 가양동 241번지 일대 새로밍 계획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77.3.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고시하였으나, 이를 등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관보에 고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시보에만 게재 고시한 것으로,

3. 당시 도시계획 결정 내용중 그간 도시계획 변경이 없는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원활을 기하게 하고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과 같이 관보에 게재 조치코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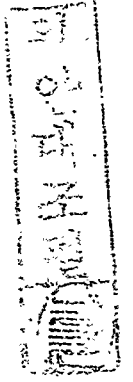
첨부 : 고시문 및 도면 각1부

(제2안)

수신 : 총무처장관

참조 : 법무담당관

제목 : 관보 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등법시행령 제8조

라. 게재내용 : 별첨 고시문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 서울특별시

(제3안)

수신 : 도시정비과장, 강서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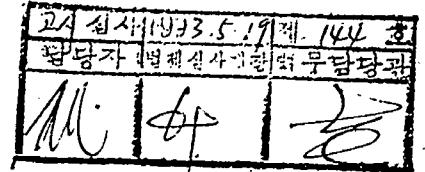
제목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 관보 게재 통보

1. 도정 58410 - 808 (93.4.27)호외 관련임.

2.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77.3.29)로 결정된 도로중 귀구에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고시문 관보 게재 의뢰한 사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 끝.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157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재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86호 (77.3.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한 사항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재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은 강서구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 5.

서울특별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 (M)	연장 (M)	시 점	중 점	비 고
신설	소로	1	1	10	630	마곡동 9 - 1	가양동 159-1	
"	"	2	2	8	180	가양동 241-2	가양동 257-2	
"	"	"	3	"	230	가양동 249-1	가양동 270-3	
"	"	"	4	"	200	가양동 145-3	가양동 187-5	
"	"	"	5	"	170	가양동 146-63	가양동 155-5	
"	"	3	6	6	100	가양동 275-6	가양동 183-6	
"	"	"	7	"	210	마곡동 산 5	가양동 252	
"	"	"	8	"	80	가양동 194-1	가양동 197-1	
"	"	"	9	"	90	가양동 148-2	가양동 151-1	

나. 도면 :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계재 생략). 끝.

